이 투자설명서는 KB 브라질 주식형 자투자신탁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브라질 주식형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KB 브라질 주식형 자투자신탁

2. **자산운용회사명:** KB자산운용㈜

2-1.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BNY Mellon Asset Management Brasil Ltda.

3 판매히사명

<u>0. Larano</u>	
판매회사	상담가능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9999
동부증권	1588-4200
리딩투자증권	1544-7004
부산은행	1588-6200
삼성증권	1588-2323/1544-1544
하나은행	1588-1111
HI투자증권	1588-7171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2008년 09월 29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비치·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각 판매회사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KB자산운용	www.kbam.co.kr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 2. 분류
- 3. 자산운용회사
-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 5. 수탁고 추이
- 6. 해지사유

Ⅱ.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 2. 주요 투자전략
- 3. 주요 투자위험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6. 운용전문인력
- 7. 투자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Ⅲ. 수수료·보수, 과세

-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매입·환매·전환 및 분배

- 1. 매입
- 2. 환매
- 3. 전환
- 4.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l .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2. 투자위험
- 3. 투자대상
- 4. 투자제한

Ⅱ. 자산의 평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Ⅳ. 매입·환매·전환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3. 전환관련 유의사항
- 4.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 4. 운용자산 규모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1.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Ⅱ. 판매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Ⅲ.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2. 잔여재산분배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4. 손해배상책임
- 5. 재판관할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Ⅱ.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2. 수시공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KB 브라질 주식형 자투자신탁

2. 분류 주식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3. 자산운용회사 KB자산운용㈜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10.15 최초설정

2008.10.06 A 클래스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변경

5.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6.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KB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입니다. KB 브라질 주

식형 모투자신탁은 <u>브라질 및 브라질관련 주식시장의 주식에 주로 투자</u>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 및 브라질관련 시장에의 투 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u>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u>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의 90%이상을 KB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2) KB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① 브라질 및 브라질관련 주식시장의 주식에 주로 투자
 - ② 해외주식운용은 브라질 및 브라질관련 주식투자에 풍부한 투자경험을 가진 BNY Mellon Asset Management Brasil Ltda.에 위탁함
 - ※ BNY Mellon Asset Management Brasil Ltda.(이하 'Mellon'라 한다)란?
 - 세계적 자산운용그룹인 BNY Mellon Asset Management의 브라질에 위치한 자회사로 1969년에 설립
 - 운용자산규모는 2007년 05월말 기준으로 31억달러
 - BNY Mellon Asset Management란?
 - 1869년 설립된 세계 13위 규모 자산운용그룹
 - 상품군별로 특화된 12개 하위 운용회사에 전세계 17,000명의 인력 보유
 - 운용자산규모는 2007년 03월말 기준으로 1조달러(원화기준 924조)
- 3) 환혜지 전략: 원화와 달러 및 유로화간의 환율변동에 대해서만 90% 수준에서 혜 지를 실시하며, 헤알화(Real)와 기타 다른 통화간에는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주식투자신탁이 가지고 있는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기타위험과 더불어 해외자산에의 투자로 인하여 해외투자자산 가격변동위험, 환위험, 환매에 따른 위험 등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12~13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KB자산운용은 <u>동일한 조건(기간, 변동성) 하에서 VaR(Value at Risk, 이하 "위험도")</u> <u>를 계산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u>하며, 이에 근거하여 <u>투자위험 등급을 5</u> 개의 등급(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중간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로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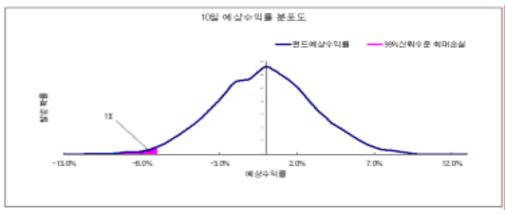
위험분류	투자신탁 VaR 범위
1등급: 매우높은위험	투자신탁의 위험도가 주식고편입형의 위험도 초과
2등급: 높은위험	투자신탁의 위험도가 주식고편입형의 위험도 이하,
200. #276	주식저편입형의 위험도 초과
3등급: 중간위험	투자신탁의 위험도가 주식저편입형의 위험도 이하,
00 H 6 C 1 B	순수채권형의 위험도 초과
4등급: 낮은위험 투자신탁의 위험도가 장기채권형의 위험도 이하,	
단기채권권형의 위험도 초과	
5등급: 매우낮은위험	투자신탁의 위험도가 단기채권형의 위험도 이하

(시뮬레이션 횟수: 10,000회)

기준지수	위험도(99%신뢰수준,
リモ ステ	10일VaR)
순수주식형(KOSPI*100%)	5.06%
주식고편입형(KOSPI*60%+국공채 3-5 년지수*40%)	2.25%
주식저편입형(KOSPI*30%+국공채 3-5 년지수*70%)	0.27%
순수채권형(국공채 3-5 년지수*100%)	0.19%
MMF 형(CD91 일물지수*100%)	0.00%

주1) 2006년 09월 01일부터 2007년 08월 31일까지 1년간의 시장데이타를 기준으로 통계 값을 계산

주2) 위험도(99%신뢰수준, 10일VaR): 99% 신뢰수준에서 10일 후 발생가능한 최대 예상 손 실율



※ 이 그래프는 10일 후 수익률이 -7.07%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1%임을 의미하며, 이를 99% 신뢰수준의 10일동안의 최대손실률을 의미하는 VaR로 사용함

펀드의 Benchmark	위험도(99%신뢰수준, 10일VaR)	
MSCI Brazil Net * 90% + 콜론 * 10%	7.07%	

이 투자신탁은 위험도가 7.07%로 주식고편입형의 위험을 초과하므로 <u>5등급 중 1</u>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 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
기준가격 산정방법	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계산
기준가격 공시시기	판매회사의 영업개시 시간 전
기즈기경 고시바비 미 자시	판매회사: 영업점포의 전자단말기 및 홈페이지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다른 간접 투자기구 수	다른 간접투 자기구 운용 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임광택	44세	이사	32기1	22,991억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졸업 장기신용은행 5년 8개월, 미 래에셋자산운용 2년 1개월, KB자산운용 5년 9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운용팀이 공동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또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19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 투자실적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급비율			
구 분	A 클래스	C 클래스/C1 클래스/ C2 클래스/C-E 클래스/ C-F 클래스	지급시기	비고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 없음	가입시	판매회사가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취득	

※ 신탁약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른 수익증권 전환분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증권의 가입조건

- A 클래스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

- C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 C1 클래스 수익증권: C 클래스 수익증권 **보유자**- C2 클래스 수익증권: C1 클래스 수익증권 **보유자**- C-E 클래스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

- C-F 클래스 수익증권: **간접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 및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2.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보수산정(비용지급)기준 A 클래스/C 클래스/C1 클래스	지급시기
		│/C2 클래스/C-E 클래스/C-F 클래스│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0.850%	
신탁보수	판매회사보수	아래 표 참조	분기별
(수수료)	수탁회사보수	연 0.080%	후급
(1)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총 보수·비용비율	아래 표 참조	

< 표>

	A 클래스	C 클래스	C1 클래스
판매회사보수	연 0.875%	연 1.775%	연 1.6%
총 보수·비용비율	연 1.82%	연 2.72%	연 2.545%

	C2 클래스	C-E 클래스	C-F 클래스
판매회사보수	연 1.42%	연 1.42%	연 0.03%
총 보수·비용비율	연 2.365%	연 2.365%	연 0.975%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기간	클래스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	A 클래스	283,602원	667,756원	1,077,712원	2,223,421원
료및	C 클래스	275,915원	845,436원	1,404,940원	2,827,576원
_ ᆢ ᆽ 보수·비용	C-E 클래스	240,332원	739,068원	1,265,526원	2,708,603원
1 1 010	C-F 클래스	99,775원	311,218원	540,711원	1,201,696원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때,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의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환차익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05. 현재 개인 15.4%, 법인 14%)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기타 유의사항: 투자대상 중 국외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매매·평가차익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하여 2007년 06월 0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환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해외 파생상품 거래등에 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임)
-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Ⅳ. 매입·환매·전환 및 분배

1. 매입

1) 수익증권의 종류

종류	A 클래스	C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E 클래스	C-F 클래스
가입조건	제한없음	제한없음	C 클래스 보유자	C1 클래스 보유자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	간접투자기 구, 기관투 자자, 기금 및 100억원 이상 매입 한 개인 또 는 500억원 이상 매입 한 법인

- 2)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내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매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전환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1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3)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 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
- 일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4) 선취판매수수료
 -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
 -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증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 2.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전환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15~1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2)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
- 일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3) 환매수수료
 -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증권 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 전환

C 클래스 수익증권

A 클래스 수익증권

C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3년에 해당하는 당월 두번째 금요일에 보유잔고 전액이 C1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C1 클래스 수익증권

C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5년에 해당하는 당월 두번째 금요일에 보유잔고 전액이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C2 클래스 수익증권

장 기 투 자 에 따른 클 래 스 자 동 전 환

- ※ A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수익증권 전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투자기간 중에 한번이라도 일부환매를 한 경우에는 클래스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 ※ 환매신청 클래스가 전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클래스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환매청구된 클래스에서 환매합니다.
- ※ <u>전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전환 및 분</u> 배관련 유의사항' 중 '3. 전환관련 유의사항'(16~1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4. 이익 등의 분배
- 1)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2) <u>분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전환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4. 분배관련 유의사항'(1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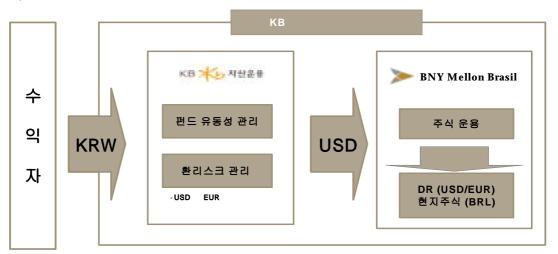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KB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

- 1) 브라질 및 브라질관련 주식시장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해외주식운용은 브라질 및 브라질관련 주식투자에 풍부한 투자경험을 가진 BNY Mellon Asset Management Brasil Ltda.에 위탁합니다.
 - ※ BNY Mellon Asset Management Brasil Ltda.(이하 'Mellon'라 한다)란?
 - 세계적 자산운용그룹인 BNY Mellon Asset Management의 브라질에 위치한 자회사로 1969년 에 설립
 - 운용자산규모는 2007년 05월말 기준으로 31억달러
 - BNY Mellon Asset Management란?
 - 1869년 설립된 세계 13위 규모 자산운용그룹
 - 상품군별로 특화된 12개 하위 운용회사에 전세계 17,000명의 인력 보유
 - 운용자산규모는 2007년 03월말 기준으로 1조달러(원화기준 924조)

2) 운용구조



- 3) 운용 목표: MSCI Brazil(USD)을 Outperform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 MGIB의 운용프로세스
 - Step 1: 정량적 분석
 - ①투자 가능한 Universe 구성(유동성을 감안하여 결정)
 - ②MGIB만의 계량 모델을 이용함
 - Step 2: 기본적 분석
 - ①재무정보: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펀더맨털 분석
 - ②사업 전망: 업종별 주요 기업 방문
 - ③Valuation 평가: PER, PBR, EV/EBITDA
 - ④배당 정책: 배당정책의 일관성 및 배당수익률 고려
 - ⑤기업지배구조
 - Step 3: 포트폴리오 구성
 - ① 섹터/종목 분산
 - ②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 ③ 체계적 위험관리 추구
 - ④ Benchmark에 구애받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성



<KB 브라질 주식형 자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
KB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	90%이상
유동성자산	10%이하

2.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혐 의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및 브라질관련 유가증권등과 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해외 및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브라질 및 브라질 관련 유가증권 등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금리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므로 한국과의 물리적 시간 차이로 인하여 당일 운용결과를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브라질 관련 국가의 당일(T) 투자결과는 다음 영업일(T+1)의 기준가격이 아닌 제3영업일(T+2)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해외투자자산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및 브라질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며, 브라질 시장의 특성상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에 대해 원/달러 및 원/유로 통화선물 등을 통한 환위험 제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지 단위 수량의 문제, 투자수익(투자원본 이외)에 대한 환노출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라 부분적인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화와 달러 및 유로화간의 환율변동에 대해서만 헤지를 하며, 기타 다른 통화간에는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 유가증권은 국내 유가증권보다 환매기간이 길게
	소요됨으로써 당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환매기간이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 수익자가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해외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대상이므로 환매시 주식투자손실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자산의 이익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유가증권 거래에 따른 국제결제와 관련된
기타 위험	송금지연이 발생할 경우, 또는 해당 국가의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환매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KB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	90%이상	- 해외주식: 60%이상 - 채권: 40%이하 - 어음: 40%이하	
2	유동성자산등	10%이하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 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에 한한다) -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로 운용하는 것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 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 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거래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 일로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 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 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Ⅱ. 자산의 평가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 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 발 표하는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중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통제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투자증권 거래 및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
장내파생상품 거래	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이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
	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③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원칙을 적용하여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세우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 비율에 의해서만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IV. 매입·환매·전환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1) 수익증권의 종류
 -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 ③ C1 클래스 수익증권: C 클래스 수익증권 보유자
 - ④ C2 클래스 수익증권: C1 클래스 수익증권 보유자
 - ⑤ C-E 클래스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대상
 - ⑥ C-F 클래스 수익증권: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 투자자.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 매 입한 법인
 - 2)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내에 수익증권을 매 입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 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4) 결제방법: 수익증권의 매입은 현금 또는 수표로만 가능합니다.
 - 5) 판매시간: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 6) 선취판매수수료
 -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
 -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 증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7시(오후 5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매입시	사금합합설	수익증권 교부일	
17시(오후 5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경과 후 매입시	사다합합된		수익증권 교부일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1)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 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명 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4)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6)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증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7) 5) 및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신탁약관 제20-2조에 의거한 전환에 따른 수익증권 전환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8) 판매회사는 5) 및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 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 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9)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5영업일	제8영업일	제9영업일
17시(오후 5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환매대금	
이전 환매시		적용일		지급일	
17시(오후 5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환매대금
경과 후 환매시	선배성구설		적용일		지급일

3. 전환관련 유의사항

- 1)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C 클래스 수익증권 및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C 클래스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한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합니다. 이때,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① 판매회사는 C 클래스 수익증권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년이 해당되는 당월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C 클래스 수익증권을 C1 클래스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 ② 판매회사는 C1 클래스 수익증권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5년이 해당되는 당월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C1 클래스 수익증권을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 2)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① 수익자의 전환청구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②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에서 규정한 해당되는 날이 포함된 당월 두번째 금 요일을 자동전환일로 보며, 자동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영업

일을 자동전환일로 하여 전환 처리합니다.

- ③ ②의 규정에 의해 전환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자동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 클래스 수익증권, C1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일부환매를 한 경우에는 전환을 하지 아니합니다.

C 클래스 수익증권

A 클래스 수익증권

C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3년에 해당하는 당월 두번째 금요일에 보유잔고 전액이 C1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C1 클래스 수익증권

C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5년에 해당하는 당월 두번째 금요일에 보유잔고 전액이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C2 클래스 수익증권

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 ※ A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수익증권 전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투자기간 중에 한번이라도 일부환매를 한 경우에는 클래스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 ※ 환매신청 클래스가 전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클래스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환매청구된 클래스에서 환매합니다.

4.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 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1)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 1) 회사명: KB자산운용(주)
- 2)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02-2167-8200)
- 3) 주요연혁
 -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인가 취득
 - 1997.07.29 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취득/1997.08.28 투자신탁 운용업무 개시
 - 1997.08.28 상품최초설정
 -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 2002.05.06 굿모닝신한증권타워로 사옥 이전
 -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에서 'KB자산운용㈜'로 사명변경
 - 2008.09.29 대주주 변경(국민은행→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지분 100% 전환

2. 주요 업무

- 1)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2)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 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 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 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⑤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⑥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 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업무의 위탁
 -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국민은행 일반 사무관리팀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합니다.
 - ③ 상기 업무 등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천원)

과 목	제19기	제18기
기 간	2006.04.01~2007.03.31	2005.04.01~2006.03.31
유동자산	93,757,205	68,648,995
고정자산	3,619,371	8,838,413
자산총계	97,376,576	77,487,408
유동부채	9,722,716	5,998,356
고정부채	162,762	419,583
부채총계	9,885,478	6,417,939
자 본 금	38,337,750	38,337,750
이익잉여금	49,169,316	32,731,719
자본총계	87,491,098	71,069,469
부채와 자본총계	97,376,576	77,487,408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09월 29일 현재, 단위: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총 수탁고
40,567	12,979	4,759	83,628	8,911	7,629	15,068	3,806	177,347

5. 운용전문인력에관한 사항

	나이	직위	운용현황			
성명			운용중인 다른 간접	다른 간접 투자기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71-	나오대하고 대하인 겨여하고 성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졸업	
임광택	44세	44세 이사 32개 22,991억		22,991억	장기신용은행 5년 8개월, 미래에	
					셋자산운용 2년 1개월, KB자산운	
					용 5년 9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운용팀이 공동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또한,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I-1.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 1) 회사명: BNY Mellon Asset Management Brasil Ltda.
- 2) 주소: Av Almirante Barroso 53-33 º ander, Rio de Janeiro, RJ, CEP: 20031-000, Brasil
- 3) 주요 주주: BNY Mellon Asset Management 99.99%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주요 연혁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동부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리딩투자증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38	생략
삼성증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HI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2. 주요 업무

- 1)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①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 ②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 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 판매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 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판매회사	홈페이지 주소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동부증권	http://www.winnet.co.kr
리딩투자증권	http://www.leading.co.kr
부산은행	http://www.pusanbank.co.kr
삼성증권	http://www.samsungfn.com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
HI투자증권	http://www.hi-ib.com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2. 주요 업무

- 1)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①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투자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신탁약관 제 19조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 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1) 회사명: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팀
- 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국민은행 서여의도영업부 7층
- 3) 주요 연혁
 - 2000.09 일반사무관리 업무 개시
 - 2002.0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일반사무관리업무
 - 2003.09 국민투자신탁운용㈜ 일반사무관리업무

2. 주요 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	종로구	인사
주소	23-7 유화증권빌딩 9층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동 43번지			

2. 주요 업무

-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의결권

- 1. 수익자 총회 및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 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 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하며,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명을 수익자총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3) 수익자총회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1)의 단서조항에 따른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봅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 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수익 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수익자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 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 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6)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 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 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당해 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 74조에 따릅니다.

2. 잔여재산분배

- 1)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 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3. 장부·서류의 열람 1) 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 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

- 1)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 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 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 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 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및 복 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 지(http://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1) 영업보고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 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 2) 감사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비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채권자는 영업시 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 121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제공하 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 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 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 회사 홈페이지(http://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19~20페이지) 및 자산운용 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 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 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 문에도 공고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 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 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정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대한 공시

- ※ 신탁약관 변경에 1)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 하여야 합니다.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수탁회사의 변경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2) 자산운용회사는 1)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해 1회 이상 공고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 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3)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 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행사

- ※ **투자신탁의 의결권**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1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 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 판 매 일 :
□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u>제공받고</u>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u>설명 들었음</u> .
투자설명서를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